

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제도 Check Point

- 출산특례**
 ('25.3.31 개정)

'24.6.19.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또는 입양 포함)가 있는 경우
 본인 및 배우자의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 배제 (세대 기준 1회)
 ※ 現 주택소유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 가능
- 부부간 특별공급 중복청약 가능**
 ('24.3.25 개정)

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경우 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 중복 청약 허용
 ※ 단 중복 당첨 시 청약 신청 당첨 건은 유효, 후 신청 당첨 건은 무효 처리

구분	신청일시	신청방법	신청장소
특별 공급	2026.04.20.(월) 09:00 ~ 17:30	인터넷 청약 (PC 또는 스마트폰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
당첨자 발표일	2026.04.29.(수)	한국부동산원 '청약Home' 홈페이지(www.applyhome.co.kr) 확인 가능	

■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

구분	59	75A	75B	84A	84B	소계
노부모부양	3	4	2	2	2	12

■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

구분	내용
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(경기도,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)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-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(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시에 한함)한 분 -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따른 '부양'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-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(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)
당첨자 선정방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당첨자 선정 순서: ①지역 → ②가점 →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→ ④추첨 ①지역: 해당지역 거주자(용인시 거주자) → 기타지역 거주자(경기도·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거주자) ②가점: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(가점제 적용기준)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,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,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③청약통장 가입기간: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- 입주자저축의 종류, 금액,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.
자녀 기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 53조에 의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제 53조 제 6호 무주택기간 미적용 ※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(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)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여 청약 불가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, 피부양자(노부모)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-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

■ 가점 산정 기준표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별표1의2 나목)

가점항목	가점상한	가점구분	점수	가점구분	점수	확인할 서류 등
① 무주택기간	32	만30세 미만 미혼자	0	8년 이상~9년 미만	18	- 주민등록표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 시,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 - 건물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등본 등 -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※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
		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20	
		1년 이상~2년 미만	4	10년 이상~11년 미만	22	
		2년 이상~3년 미만	6	11년 이상~12년 미만	24	
		3년 이상~4년 미만	8	12년 이상~13년 미만	26	
		4년 이상~5년 미만	10	13년 이상~14년 미만	28	
		5년 이상~6년 미만	12	14년 이상~15년 미만	30	
		6년 이상~7년 미만	14	15년 이상	32	
② 부양가족수	35	0명	5	4명	25	- 주민등록표등·초본 - 가족관계증명서 ※ 청약 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- 만 18세 이상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시 추가 서류 1) 만18세 이상~만30세 미만: ① 자녀 혼인관계 증명서 ② 출입국사실증명원 2) 만30세 이상: ①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② 주민등록표초본 ③ 출입국사실증명원
		1명	10	5명	30	
		2명	15	6명 이상	35	
		3명	20			
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	17	6개월 미만	1	8년 이상~9년 미만	10	- 청약통장 (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) 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합산하지 않음
		6개월 이상~1년 미만	2	9년 이상~10년 미만	11	
		1년 이상~2년 미만	3	10년 이상~11년 미만	12	
		2년 이상~3년 미만	4	11년 이상~12년 미만	13	
		3년 이상~4년 미만	5	12년 이상~13년 미만	14	
		4년 이상~5년 미만	6	13년 이상~14년 미만	15	
		5년 이상~6년 미만	7	14년 이상~15년 미만	16	
		6년 이상~7년 미만	8	15년 이상	17	
		7년 이상~8년 미만	9			
※ 본인 청약가점 점수 = ① + ② + ③						

※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

■ 특별공급 중복 청약 관련

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차례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, 2024.03.25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세대원 간 특별공급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.

구분	청약자간 관계	중복청약 유형	중복당첨 시 처리방법
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	세대원	특공+특공 [가능]	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
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	부부	특공+특공 [가능]	접수일시가 빠른 신청 건은 유효, 접수일시가 늦은 신청 건은 무효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정자가 유효
	세대원	특공+특공 [불가]	1건이라도 당첨 시 모두 부적격
		특공+일반 [가능]	모두 유효